

[등록번호 20100600008] [최초등록일 2010-01-08] [최종등록일 2024-11-11] 이메일 psg128@hanmail.net



정 보 공 개 서

온천골푸드 박수근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

온천골푸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 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계양로35길 9-1 (계양동)

대표전화: 053-814-0010 팩스번호: 053-811-8337 가맹사업팀: 053-814-0010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마당'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법령 및 제도'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 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사용 브	브랜드	주 소					
	박수근네	온천골	경상북도 경산시 계양로35길 9-1 (계양동)					
온 천골푸드	설립일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E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순인2구드 	2016.01.01	해당사항없음	2016.01.01	박수근 053		3-814-0010 053-811-8337		
	법인등록번호	해당시	· ·항없음	사업자등록번호		292-70-0004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와 관련된 특수관계인의 해당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박수근네 온천골]이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박수근네 온천골	
상 호	박수근네 온천골 OO점	
상표(서비스표)	박수근데 온 전 골	출원번호 : 4120030017318 (2003.08.09) 등록번호 : 4101073560000 (2004.10.25)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상기의 표장(현)에 대한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일체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자료에 대한 증빙자료로 재무제표를 별첨으로 첨부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	-	-	214,432	-	-
2022년	276,102	254,783	21,319	218,515	38,592	24,610
2023년	302,807	256,985	45,822	225,545	41,328	24,503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직영점 매출을 포함하여 위 금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괴러어버	이르 성 지이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바스그	대표	2005. 07. 01. ~ 현재	 대표	가맹점 개설 및 관리			
관련 임원	박수근	ᄪ	2003. 07. 01. ~ 연제	네 프	가맹점 개설 및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니저	임원=	수(명)	지위스/며)
시섬	상근	비상근	극전구(8)
2023년 12월 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박수근네 온천골]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박수근네 온천골	상표권	4120030017318 (2003.08.09)	4101073560000 (2004.10.25)	박수근	2024.10.25.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가 등록거부, 기간 만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표·서비스표 등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의 영업표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전항에 의거 영업표지가 변경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 전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없고, 변경 전의 영업표지가 부착된 제품, 기타 점포설비 등은 당사의 요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П. 가맹본부의 [박수근네 온천골]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05.07.01

2. [박수근네 온천골] 연혁

○ 당사 연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비고
온천골 가맹사본부			2005.07.01 2013.06.25	경상북도 경산시 계양로 175	상호변경
041755	박수근네 온처골	박수근	2013.06.26 - 2015.12	(계양동)	기존 사업자
│ 온천골푸드 │ │			2016.01.01 현재	경상북도 경산시 계양로35길 9-1 (계양동)	폐업후 재개업, 소재지 이전

3. [박수근네 온천골] 업종

영업표지	업종			
박수근네 온천골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가 다네 순선된 	한식	소고기국밥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박수근네 온천골]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시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4	14	0	13	13	0	13	13	0
서울	-	-	-	-	-	-	-	-	-
부산	1	1	0	1	1	0	1	1	0
대구	5	5	0	5	5	0	5	5	0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1	-	-	-	-	-	-	-
세종	-	-	ı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8	8	0	7	7	0	7	7	0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단위: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증감
2021	13	2	0	1	1	14	+1
2022	14	0	0	1	0	13	-1
2023	13	1	1	0	0	13	-

6. [박수근네 온천골]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는 [박수근네 온천골]외에 가맹본부를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 [박수근네 온천골] 가맹점사업자당 바로전 사업년도에 영업한 연간 평균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연간 평균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	비고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1-
전체	13	240,588	4,050	1,525,992	51,333	32,160	707	12개점 기준
서울	-	해당 없음						

부산	1	해당 없음						5개점 미만
대구	5	155,733	3,729	271,350	5,249	44,220	1,945	4개점 기준
인천	-	해당 없음						
광주	-	해당 없음						
대전	-	해당 없음						
울산	-	해당 없음						
세종	-	해당 없음						
경기	-	해당 없음						
강원	-	해당 없음						
충북	-	해당 없음						
충남	-	해당 없음						
전북	-	해당 없음						
전남	-	해당 없음						
경북	7	305,070	5,565	1,525,992	51,333	32,160	707	7개점 기준
경남	-	해당 없음						
제주	-	해당 없음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 6.7]

-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당사의 물품 공급액이 가맹점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5%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에 개점한 가맹점의 년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의 영업기간을 1년치로 환산하여 년간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가맹점은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위 추정 매출액은 가맹점이 위치한 지역 및 상권, 실제 매장의 크기, 실제 운영한 영업개월수,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이 상이하므로 전국 평균매장의 평균매출액이 아니며, 귀하가 실제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추정 자료는「가맹사업법」시행령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귀하가 요청할 경우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박수근네 온천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박수근네 온천골] 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12.31. 기준	13	2,740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박수근네 온천골]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에서 직전사업연도에 [박수근네 온천골] 과 관련하여 광고·판촉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경산우체국	예금영업팀	경상북도 경산시 백자로17(사동 650-2)	053 -819 -3704

○ 귀하는 또한 우체국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 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 치방법은 우체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해당지점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 본 문에서 정한 가맹금 예치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온천골푸드 박수근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 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 험금 지급	평균2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박수근네 온천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32,000천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2,000				
가입비	11,000	가맹금예치 당일지급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제공
교육비	11,000	가맹금예치 당일지급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1회성 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10,000			
물류보증금	10,000(대구·경북)	계약 즉시	계약 후 당사에서 공급하는 물품납입의 지연, 기타 영업방침 등의 위반	설정 이외의 지역은 20,000천원
담보목적물	없음			
인적보증	없음			

○ 상기금액은 대구·경북지역에 매장운영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한하여 책정된 금액이며 대구·경북이외의 지역은 보증금을 10,000천원이 추가된 20,000천원으로 보증금이 증가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32,000천원(부가세포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32,000
가입비	11,000
교육비	11,000
물류보증금	1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첨부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m² 당 금액	지급 기한	비고
총계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간판					
기자재,집기류			해당내역	없음	
(테이블,접시)					
기자재,집기류					
(주방)					
pos 시스템					

- 인테리어와 주방집기는 당사의 컨셉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선택사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그릇에 대한 별도의 업체제한은 없지만 놋그릇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의 입지 선정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단, 가맹점희망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을 파악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최종결정은 가맹점 희망자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 [박수근네 온천골]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그릇에 대한 별도의 업체제한은 없지만 놋그릇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8) 당사는 가맹금의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가맹금에 대한 분할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이 정보공개서[V.9]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없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총 광고비용중 70%를 가맹점 수에 따라 부담	추후 협의	광고실행 전 계약해지	광고실행 후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에 따라 다름	교육당일 완납	없음	소멸성비용	가입당시의 교육비와는 별도
간판류 임차료		해당내역없음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내역없음				
시설, 각종기기 의 교체·보수 비용	가맹본부 의 제한 없음	자체 선정업체와 협의	교체·보수시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비용	가맹본부 의 제한 없음	가맹본부 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 1. 참조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내역없음				
POS 사용료		해당내역없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 하는 날까지			일체의 금전지급의 무를 지체하는 경우 부담

○ 당사는 당사의 판단에 의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대와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매체(TV, 라디오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체 광고를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판촉물에 집중,

직접적으로 매체편성 또는 광고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 또한 당사는 광고비를 월 또는 분기별 분납금 형태로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광고 계획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광고를 진행합니다. 단,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별도의 공지를 통해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있어 재고관리 ,회계관리에 별도의 감독.관리를 하지 않으며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재고관리 및 회계에 대한 조언 및 상담은 가능합니다.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 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당사는 자체제조하여 공급하는 품목 이외에는 가맹점이 자율로 조달,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장되에는 가행함이 자율도 조일, 공급하므로 차액가맹금이 없음.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월	가맹본부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월	가맹본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월	가맹본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이나 재계약시 납부할 금액내역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사의 허락없이 해당 상호를 사용하거나 도용한 경우 가맹본사로부터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한 기간에 준하는 상표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박수근네 온천골]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원을 [박수근네 온천골]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1,000				
교육비	11,000	계약 후 7일 이내	반환되지 않음	소모성비용	
보증금	10,000	계약 후 7일 이내	반환		

-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이 정보공개서[V.7]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해지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사에 대한 채무전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

야 합니다. 위 채무상환이 지연되는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는 위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변제일까지 연체된 채무액의 연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영업표지나 노하우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비품·집기 등을 계약해지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원상회복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철거·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철거·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 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유사 경쟁업체에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조직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도 금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박수근네 온천골]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유사 경쟁업체에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조직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도 금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을 박수근네 온천골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 중 부득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이 중단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 중 가입비 및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수금액을 정산한 잔금이 반환되나 소멸성 비용인 교육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가맹본부의 부득이한 가맹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상표사용에 따른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상호를 사용하는 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상표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에서 제공된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고조치 및 가맹계약의 절차를 통해 해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귀하가 [박수근네 온천골]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박수근네 온천골]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박수근네 온천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당사가 2023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없습니다.
- 2) 당사가 [박수근네 온천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2023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

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국밥				
육국수	이ᅏ에 키케디	이이이 레프오	1회 위반: 구두 경고	
국포장	진숙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들	1회 위반: 구누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국수사리	판매할 수 없음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공기밥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메뉴의 주재료는 가맹본부에서 협의된 사항들로 사용하고 소스 등 부재료 또한 가맹본부에서 개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리 시 표준화된 조리법을 사용, 동일한 맛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가 현재 취급하는 상품·용역 중에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국밥	6,000	변경 시 개별통보	2023.12.31 기준
육국수	6,000	변경 시 개별통보	"
국포장 (4인분기준)	14,000	변경 시 개별통보	"
국수사리	2,000	변경 시 개별통보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영업지역 제도 유무와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등 글인 입중 급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소고기국밥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가맹사업	온천골	없음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 인구 2만명 당 1점포, 5000세대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 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 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 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 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지역 재조정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업지역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 도 영업지역 변경(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거나 동의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과 정에서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도 있습니다.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간의 보상금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박수근네 온천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12 2000 10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 [박수근네 온천골]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 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 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1항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을」이 수락하 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갑」이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5.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갑」이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정기적으로 실 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갑」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24]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일반적 해지 사유	계약조문
1. 당사의 영업방침을 위반한 경우	
2. 교육비,물품대금, 시설비, 가입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과 관련된 가맹계약서 상의 조항으로 불참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4. QCS 위반 가. 당사의 가맹점 평가 리스트에 의한 경고조치 등을 받은 경우 나. 당사가 정한 품질기준(제품조리 매뉴얼, 서비스 매뉴얼 등)을 위반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보관하는 물품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유통기한을 넘긴 물품을 보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라. 제 28조[점포시설 및 주방기기]에 의한 점포시설, 주방기기 등의 교체요구에 불응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마. 당사가 정한 복장 및 개인위생사항(면도불량, 슬리퍼 착용금지 등)을 준수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마. 당사가 정한 복장 및 개인위생사항(면도불량, 슬리퍼 착용금지 등)을 준수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방. 점포내에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5. 소비자 클레임과 관련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클레임이 발생하여 당사로부터 이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클레임에 대한 내용을 담당 S/V의 확인하고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내용확인을 못한 경우) 6. 판매촉진활동의 위반 가. 가맹계약서 제 29조 [판촉]에 정한 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광고물 제작 시 당사의 BI나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이의 시정을 요구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가. 당사가 정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7.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다음사항을 위반한 경우 8. 가. 당사가 정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나. 인근 [박수근네 온천골]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가맹점의 모든 운영사항에 대하여 가맹점간에서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를 위반하거나, [박수근네 온천골]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7조 1항

- 11.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와 다른 가맹점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2.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등으로 당사의 가맹사업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 13. 기타 가맹점 사업자의 부도덕한 행위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당사의 가맹사업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 14. 당사가 지정한 상품의 판매가격을 가맹점사업자의 임의로 조정하여 판매함으로써 당사와 당사의 [박수근네 온천골]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상 손실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15. 당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박수근네 온천골] 사업의 영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상호 합의된 상품의 판매를 기피할 때.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명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무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7조 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동의 여부 회신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정한 가맹점운영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 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 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ᅟᅟᆖᄓᆞᆇᄭᅟᅵ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 신규계약의 형태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비고
ı	상속	본부 승인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신청->당사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가능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0일	피성년 후견인에
		가량소요) ->승인 여부 통지 ->가맹본부의 상속에 의한 사업자변경 계약 체결(5일소요)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승인이 거절될	
			, , , , , , , , , , , , , , , , , , , ,	수 있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대리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통지 -> 대리행사 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해당없음	해당없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박수근네 온천골]와 동일한 업종의 경업금지에 관한 내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해당내역없음	해당내역없음	문의: 본사 (053-814-0010)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박수근네 온천골]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7:30 ~ 21:30 (14시간)	월25일이상	문의: 본사 (053-814-001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규정상 3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할 경우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 고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가맹본부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월	가맹본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월	가맹본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영업방침에 대해 교육을 받은 슈퍼바이저를 통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방문마다 별 도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박수근네 온천골]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	비율	분담 절차	비고
1正	9 T 9 J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T 급 길시	이끄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 70% 중 전체 가맹점이 분할납부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전국 행사)
개별 행사	행	사에 따라 달	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할인카드.멤버 십제휴서비스				해당내역없음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 단, 본사의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임의의 할인행사 등의 내용을 할 경우에는 본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 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 소속 임원이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0일 내외	32,0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비용없음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15일 내외소요	비용없음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선택사항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비용없음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비용없음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29(1일)	32,00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비용없음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비용없음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비용없음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예치기간 경과후 지급(가맹금포함)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비용없음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가맹금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 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가맹본부와 별도로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계약체결 후 5일이내에 가맹금예치를 신청하

여야 합니다. 신청서의 작성은 가맹본부와 협의하에 작성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예치증서는 보관하고 있어야하고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한국공 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 또는 시ㆍ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 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 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 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 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 한 실내건축공사 에 소요되는 일 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 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 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 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ㅇ점포환경개선일 로부터 3년 이내 에 가맹본부의 책 임없는 사유로 계 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 함)되는 경우 가맹 본부 부담액 중 잔 여기간에 비례하 는 부담액은 지급 하지 아니하거나

시함에 때	가라 소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이미 지급한 경우
요되는	비용은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에는 환수 가능
 제외)		첨부) → 3차에 걸쳐가맹	
(1121)		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3차 : 2차 지급	
		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	
		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	
		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	
		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	
		담액을 지급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판촉지원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 적 팜플렛·전단·리 플렛·카달로그 등의 제작비용	전국 또는 지역단위 판 촉행사시 (당해 지역 가맹점 해 당)	가 맹 계 약 기간	소요되는 비용 전 액 당사 부담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제품, 설비(집기), 판매촉 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 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 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	가맹점 부담

		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	(가맹금에 포
입자 업자	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	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함된 통상의
	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경영지도 비용
요청 시 	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을 초과한 부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알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의 지원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별도의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V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박수근네 온천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교육	회사 소개, 재료손질, 음식 조리실습 재고관리, 물품주문 및 구입 등	현장강의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교육	신 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현장강의 실습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비정기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박수근네 온천골]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4주	11,000(부가세포함)	그 외 오픈지원으로 5일 현장 진행함
보수 교육	상황에 따라 다름	상황에 따라 다름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5조에 따라 협의 후 교육일정을 조정하여 수료하여야하며 신규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는 가맹점의 운영, 제품의 조리를 할 수 없고 가맹계약서 제13조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12.31.일 기준	비고
0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비고
없음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 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1> 공급품목리스트

(부가가치세 별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메뉴, 시세 또는 본사 경영방침의 변경에 따라 위 공급 원·부자재의 종류, 규격 및 가격은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2>주방기기 및 집기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첨부3>직영점 및 가맹점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